

# CJ CGV(주) ESG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1.11.04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ESG”란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회사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신뢰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측면의 가치와 성과를 측정 또는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합의 및 상생을 실천, 회사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제반 경영활동을 말한다.

### 제4조(직무와 권한, 기능)

① 위원회는 회사가 ESG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② 위원회는 ESG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ESG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승인한다.

## 제 2 장 구 성

### 제5조(구 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본인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임기는 연장된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⑥ 위원의 결원 시 제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총원하고, 총원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 3 장 회 의

### 제7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추가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집절차는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에서 위원장은 제외한다.

### 제8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본 조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9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부의사항)

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SG(지속가능경영) 전략 기본 방향 및 계획
2. ESG(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추진 활동
3. ESG(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으로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연구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4 장 보 칙

### 제14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ESG 업무 담당 조직의 최상위 직급자가 수행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제1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4일부터 제정·시행한다.